

[별표 2의2]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사업, 산정방법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 (제7조의4 관련)

1.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 계획·사업

가.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중 가. 도시의 개발, 나.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카. 관광단지의 개발, 파. 특정지역의 개발, 하. 체육시설의 설치, 거. 폐기물·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계획

나. 영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3.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2. 생태면적률 산정 방법(생태면적률은 다음 각 목의 순서로 산정한다)

가. 개발 대상지를 자연지반녹지와 인공화 지역으로 구분

나. 인공화 지역을 제4호에 따라 구분된 면적유형으로 구분

다. 인공화 지역의 면적유형별 면적에 정해진 가중치를 곱하여 면적유형별 생태면적을 산출

라. 자연지반지와 인공화 지역 생태면적의 합을 전체 대상지 면적으로 나누어 생태면적률을 산출

$$\text{생태면적률} = \frac{\text{자연지반녹지 면적} + \sum(\text{인공화 지역 면적유형별 면적} \times \text{가중치})}{\text{전체 대상지 면적}} \times 100(\%)$$

3. 생태면적률 달성목표

개발사업 유형별 생태면적률 달성목표는 다음 표와 같으며, 사업계획 수립, 계획·목표생태면적률 설정, 영향평가 협의시의 지표로 활용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개발사업 유형	권장달성목표	세부내용
1. 도시의 개발	30 이상	구도심개발사업
	40 이상	구도심 외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20 이상	-
3. 관광단지의 개발	60 이상	-
4. 특정지역의 개발	20~80 이상	개발사업 유형별 기준 적용
5. 체육시설의 설치	80 이상	일반 체육시설(실외)
	50 이상	경륜·경정시설(실내)
6. 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50 이상	매립시설
	40 이상	소각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 구도심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재정비 등 구 도심에서의 개발사업에 적용
-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내용, 지역적 특성(인구감소지역 등), 권장달성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적용할 생태면적률 달성목표를 최대 50퍼센트 범위 내까지 감소하여 설정할 수 있다.

4. 면적유형별 가중치

면적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1	자연지반 녹지	-	1.0	-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 온전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 토 지반에 조성된 녹지
2	수공간	투수기능	1.0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함 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상 태의 수공간 및 공유수면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 연못
3		차수 (투수불가)	0.7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 자연지반 또는 인공지반 위에 차 수 처리된 수공간
4	인공지반 녹지	90cm≤토심	0.7	- 토심이 90cm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 상부에 조성된 녹지
5		40cm≤토심< 90cm	0.6	- 토심이 40cm 이상이고 90cm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6		10cm≤토심< 40cm	0.5	- 토심이 10cm 이상이고 40cm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7	옥상녹화	30cm≤토심	0.7	- 토심이 30cm 이상인 옥상녹화시스템 이 적용된 공간	- 혼합형 옥상녹화시스템
8		20cm≤토심<	0.6	- 토심이 20cm 이상이고 30cm미만인	- 중량형 옥상녹화시스템

면적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9		30cm	0.5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 저관리 경량형 옥상녹화시스템
		10cm≤토심<20cm		- 토심이 10cm 이상이고 20cm미만인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10	벽면녹화	등반보조재, 벽면부착형, 자력등반형 등	0.4	-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반형의 경우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11	투수포장		0.4 ~ 0.2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 투수성능 및 적용 공법에 따른 가중치 차등 부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의 상세기준 준용)
12	저류침투시설 연계면	저류침투시설 연계면	0.2	-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는 저류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13	저영향개발기법시설 연계면	저영향개발기법시설 연계면	0.3	- 누적유출고 10mm 이상을 처리하는 저영향개발기법 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매뉴얼」의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중 식생 체류지, 나무 여과상자, 식물재배화분,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침투도랑, 침투통, 모래 여과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저영향개발기법시설 연계면	0.2	- 누적유출고 5mm 이상을 처리하는 저영향개발기법 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14	포장면	포장면	0.0	-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물생장이 없음	-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비고

- 제1호의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 계획·사업란 가목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생태면적률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도시의 개발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고속국도건설공사계획
 - 도시의 개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나목·바목
 -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차목(7)단서에 따른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
 - 그 외 적용 제외대상 개발계획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의 [부록3] 생태면적률 적용 내 [별첨2]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따름
- 면적유형별 가중치에 대한 상세한 판단기준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의 [부록3] 생태면적률 적용 내 [별첨3] 면적유형별 판단기준을 따른다.